

고령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2018. . .	
연 월 일	(제 회)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18. . .

제 출 자 : 고 령 군 수

고령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고 령 군 수 (총무과장)
제출 연월일	2018. . .

법무규제개혁담당 심사필

1. 제정 이유

- 북한이탈주민의 지속적·안정적인 정착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관계기관과 협업, 가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자립·자활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주민으로서 안정적 사회 적응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나. 지원 대상 : 관내 거주 또는 소재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관련 지원단체
- 다. 지원 범위
 - 언어·기초학력 등 사회적응교육 및 고충·생활법률 등의 상담
 - 응급구호, 보건의료, 직업교육, 취업알선 및 문화·체육행사 지원
 - 지역 주민과 교류사업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제 정 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련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관련사항 :

고령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고령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고령군민의 한 사람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하 "가정"이라 한다)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적용범위는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북한이탈주민과 가정 및 지원단체로 한다.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발굴·추진할 수 있다.

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교육
2.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취업, 교육, 의료, 법률지원 사업

- 다. 합의 :
- 라.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 2018. 3. 23 ~ 4. 11/ 의견 없음
- 마. 성별 영향분석 평가 결과 : 개선 의견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근거하여 고령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 성별 균형 참여 등의 성별영향을 검토한 결과 제6조(협의회 구성)에 있어 성별에 따른 구분을 두지 않아 위촉위원이 한 성에 치우칠 수 있으므로 성별균형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제6조(협의회 구성)
 -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규정에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
- 바. 규제영향 분석 결과 : 해당 없음
- 사. 기타 관련사항 : 해당 없음

- 3.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 4. 북한이탈 주민과 지역 내 주민 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
 -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역협의회 설치)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고령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종교 및 복지단체 등 민간지원기관·단체의 회원
 - 4. 그 밖에 군수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담당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및 주민과 교류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관련기관·단체에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군수는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고령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지원단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고령군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3조(비밀엄수의무) 협의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제반 정보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령군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및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지원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로 하여금 위탁 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총무과	
연 락 처	054-950-6073